

제4차 국제공증인협회 아시아지역위원회(CAAs)

참가보고서

박 광 빈

대한공증인협회 국제이사
법무법인(유한) 올촌 변호사

1. 들어가며

2014. 9. 2.부터 9. 3.까지 중국 북경에서 제4차 국제공증인협회 아시아지역위원회가 열렸다. 2010. 7. 국제공증인협회(UINL)는 기존의 유럽·아메리카·아프리카 지역위원회 외에 아시아지역위원회(CAAs)를 창설하기 위하여 일본에서 준비모임을 가진 이래 매년 회원국을 순방하면서 회의를 개최하여 왔다(2011년에는 인도네시아, 2012년에는 서울, 2013년에는 몽골). 국제공증인협회에 가입한 순서로 본다면 중국이 서울이나 몽골보다는 먼저 개최하는 것이 기대되었으나, 그 동안 중국 내부 사정상 연기를 요청하여 2014년에 열리게 되었다. 최근 성장하고 있는 중국을 보여주듯 중국공증인협회는 제4차 아시아지역위원회 회의를 성실하게 준비하여 회원국 상호간의 우호증진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2. 회의 전 일정

우리 협회의 유원규 협회장님을 비롯한 대표단 5명은 9. 2. 오전에 인천공항을 출발하여 북경공항에 도착하였다. 마침 북경공항에서는 평양에서 프로레슬링 경기를 마치

고 공항에 도착한 안토니오 이노끼 등 여러 관계자들이 인터뷰 등을 하느라고 어수선한 분위기가 연출되었다. 우리 일행을 안내해 준 허옥 변호사(법무법인 율촌)를 따라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하여 시내로 향하였다. 몇 년 전에 중국을 방문하였을 때와는 달리 차량의 증가로 인하여 북경시내의 교통체증은 대단하였다. 식당에서 평소 대표단과 친분이 있는 주중한국대사관의 공사 한 분이 마중을 나와 주셨다. 점심 시간임에도 식당은 매우 한산하게 느껴졌다. 그 이유를 물어보니 최근 중국 정부가 부패척결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언제 어디서나 같은 문제가 있나 보다.

그날 오후 예비회담 시간에서는 회장단 구성과 관련된 문제가 논의되었다. 지금까지는 직전 회의를 주최한 국가의 대표가(2013년 몽골) 회의 종료 시부터 이번 회의 시까지(2014년 중국) 아시아지역위원회 회의 회장을 맡도록 하였다. 그 결과 회의 개최를 준비하여야 하는 나라에서는 회장이 아니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UINL측과 협의를 하여야 하는 등 불편이 있었다. 2015년에 지역위원회 개최를 희망하고 있는 일본 측에서 “이번 회의에서 차기 회장을 다음 번 회의 개최국과 일치할 하자”는 제의를 하였다. 그렇게 되면 중국은 아시아지역위원회 회장을 양보하여야 되는데 다른 회원국으로서는 부담스러운 입장들이었다. 그런데 중국 측은 선선히 그렇게 하자고 하여 다들 대국다운 면모를 보여주었다면서 환영하는 분위기였다. 사실 중국은 이미 UINL에서도 주요 보직을 맡고 있고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참고로 중국은 UINL 86개 회원국 가운데 최고 연회비 약 50,000유로를 부담하는 5개국(독일, 프랑스, 스페인, 이태리, 중국) 중 하나이다.

저녁에는 하얏트 호텔에서 각국 대표단과 동반인들을 위한 환영만찬이 있었다. 식사 도중 중국 전통 공연내용도 좋았다.

3. 제4차 중국 북경회의

중국은 대표단 14명, 일본은 6명, 몽골은 4명, 베트남은 5명, 한국은 5명, 그리고 회원 가입을 준비 중인 태국은 3명, 그리고 UINL 회장과 전(前) 회장 등 UINL 측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가 열렸다.

4. 주요일정 및 아젠다

○ 2014. 9. 2.(화)

- 17:00~17:50 참가국 대표 사전 미팅 - 그랜드하얏트베이징, Drawing Room II
* 3.(수) 회의 진행 및 아젠다 관련 논의 / 각국 대표 2인 참가
- 18:00~21:00 환영리셉션 - 그랜드하얏트베이징, The Residence III

○ 2014. 9. 3.(수)

- 09:00~09:40 개회식
* 중국공증인협회 회장 개회사 및 중국 법무부장관 환영사
UINL 회장 축사, 아시아지역위원회 회장(몽골) 축사
- 09:00~10:40 2014/2015 각국 공증현황 소개
* 일본, 인도네시아, 중국, 한국 각 15분
- 10:40~11:00 휴식(커피브레이크)
- 11:10~12:15 2014/2015 각국 공증현황 소개
*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각 15분
- 12:30~14:00 오찬
- 14:00~15:30 제1주제 토론
* 주제: 공증인의 의무(Deontology of notarial profession) / 각 10분 발표
- 15:30~15:50 휴식(커피브레이크)
- 15:50~17:20 제2주제 토론
* 주제: 게이트웨이 웹사이트, 전자공증시스템, 정보처리플랫폼 등을 포함한 공증 정보화 개발에 관하여(The development of the notarial Informationization, including Gateway Website, E-notary System and Information Processing Platform, etc.) / 각 10분 발표
- 17:20~17:30 아시아 공증인을 위한 UINL 계획 소개
- 17:30~18:00 총차기 회의 논의(주최국, 회장, 부회장, 재무, 총무 등 선출, 회의 결과 서명 등)
- 18:00~18:30 폐회
- 19:00~21:00 저녁식사(환송만찬) - 장소 TBD

○ 2014. 9. 4.(목) : 선택 여행

5. 대한공증인협회의 주요 발표내용

(1) 한국 공증제도 2014/2015 현황

(국문)

한국의 2014/2015 공증제도 현황

2014. 9. 3. 대한공증인협회
박 광 빈 국제이사

I. 회원 및 공증업무 처리 건수 변동 현황

1. 임원 개선

○ 2014. 3. 31. 개최된 협회 대의원 정기총회 및 4. 15. 개최된 운영위원회에서 임기 2년의 신입 협회장으로 유원규 변호사를 선출하는 등 아래 명단과 같은 협회 집행부 임원을 새롭게 선출

○ 2014/2016 상임 집행부 임원 명단

* 협 회 장: 유원규

* 부협회장: ① 김주덕 (수석)

② 김종환

③ 안원모 (총무이사겸임)

④ 이상석

* 상임이사: ① 박광빈 (국제이사)

② 김건수 (기획이사)

③ 김영철 (회원이사)

④ 남상우 (법제이사)

⑤ 이봉상 (재무이사)

2. 회원 및 공증업무 처리 현황

○ 2010년부터 시행중인 공증인 정원 및 정년제도 시행으로 인가공증인 수는 점차 감소되어 가고 있으며, 반대로 임명공증인 수는 순증하고 있음.

* 정년제도 : 2017. 12. 31.까지는 80세 정년, 2018. 1. 1.부터는 75세 정년

* 정원제도 : 지방검찰청 별 임명공증인과 인가공증인 정원 수 규정

- 전국적으로 임명공증인 86명, 인가공증인 190개소 등 총 276개소

○ 2014. 8. 20. 현재 회원 현황

연도 \ 구분	임명공증인	인가공증인	합계
2014. 8. 20.	66	296	362
2013. 12. 31.	59	298	357
2012. 12. 31.	48	316	364
2011. 12. 31.	40	339	379
2010. 12. 31.	38	355	393
2009. 12. 31.	33	361	394
2008. 12. 31.	33	353	386

○ 2014. 8. 20. 현재 각 지역별 공증인 현황

지 역	임명공증인	인가공증인		공증사무소 합 계
		사무소	공증담당변호사	
서 울	22	141	751	163
의정부	3	12	39	15
인 천	1	19	56	20
수 원	10	34	117	44
춘 천	3	3	10	6
청 주	2	7	26	9
대 전	5	8	26	13
대 구	5	19	77	24
부 산	3	17	77	20
울 산	2	7	25	9
창 원	4	8	27	12
광 주	3	14	53	17
전 주	2	5	21	7
제 주	1	2	5	3
합 계	66 (18.23%)	296 (81.77%)	1,310	362 (100%)

○ 연도별 공증업무 처리 건수 변동 현황

※ 매년 12. 31. 기준 / 건

구분 연도	공정증서	정관인증	의사록인증	사서증서인증
2013	494,745	4,697	394,639	827,699
2012	701,793	5,582	402,150	861,561
2011	873,252	8,556	438,766	891,413
2010	760,336	10,985	396,193	823,075
2009	684,944	33,035	498,386	785,977
2008	779,806	51,851	543,118	909,435
2007	799,089	55,156	553,276	1,084,259
2006	691,710	52,186	533,277	1,018,542
2005	690,330	54,004	505,817	1,087,973
2004	1,022,003	47,721	492,795	911,697

- * 공증제도가 중요거래의 증거를 보전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권리자의 권리실행을 위한 사실을 증명해주는 제도로서 예방 사법 기능을 수행하지만, 공증업무 처리 건수 현황에 큰 변동이 없는 상태
- * 2013. 10. 부터 대부계약서 공증시 대부업자 일방만의 대리 공증을 금지하는 “집행증서 작성사무 지침” 이 시행되면서 공정증서 작성 건수는 대폭 감소

II. 공증 제도 변경 등 주요 현황

1. 징계전력 공증인의 재임명 제한

- 법무부는 2013. 9. 1부터 다음과 같은 “징계 전력자의 공증인 임명 등 제한 기준”을 시행함. 그 주요 내용은 직전 임기 5년 동안 과태료 2회 또는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는 등 공증인으로서의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공증인에 대해서는 ‘재임명 · 재인가’를 하지 아니하고, 또한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신규 임명 · 인가’도 거부하도록 하는 것임.

2. 집행증서 작성 대상 확대 논의중

- 공증인법은 금전이나 어음 등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었던 공증을 건물이나 토지, 특정동산 등 물건의 인도를 구하는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음.
- 그러나 공증인법 시행령에서 특정동산의 범위를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동산 중 ① 「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 ②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③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④ 「항공법」에 따라 등록된 항공기, ⑤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공장재단이나 광업재단으로 등기된 기업재산, ⑥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등기되거나 등록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음.
- 인도집행증서 대상에 자동차나 항공기 같은 주요 동산들이 제외되고, 국민들이 가장 많이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 임차 건물의 인도 또한 법률적 제약이 많아 사실상 거의 활용되고 있지 못하고 있어 자동차 등 일부 동산을 포함하고 의사진술 청구권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법률개정을 추진중에 있음.

3. 각종 공증서식 개정 검토

- 2010년 공증인법이 개정되어 선서인증, 전자인증제도가 새로 도입되고, 수차의 상법 개정으로 정관 및 의사록 인증에 많은 변화가 발생했으며, 또한 민법의 개정으로 후견계약 공정증서가 신설되고, 신탁법의 개정으로 신탁표시제도는 폐지되었으며, 자기신탁선언은 반드시 공정증서를 작성하도록 되는 등 각종 법령 개정에 따른 공증서식의 신설 또는 변경이 필요하게 되어 후견계약 공정증서 서식 신설 등 공증서식 전반에 대한 개정을 추진중에 있음.

(영문)

Current Situation of the 2014/2015 Notarization System of the Republic of Korea

Sep. 3, 2014, KNA

PARK Kwang Bin, Director of International Relations

I . Changes in the number of members and notarization cases and current situation

1. Election of executive members

- At the KNA Annual General Meeting of March 31, 2014 and the Operation Committee Meeting of April 15, Mr. RYOU, Won Kyou as the new KNA president with the two-year term, and other executive members were newly elected as listed in the following.
- Lst of the standng execution board's executive members for 2014/2016
 - * President : Mr. RYOU, Won Kyou
 - * Vice Presidents : ① Mr. KIM, Choo Deok (Senior)
② Mr. KIM, Jong Whan
③ Mr. AHN, Won Mo (& Executive Directors of General Affairs)
④ Mr. LEE, Sang Seok
 - * Executive Directors : ① Mr. PARK, Kwang Bin (International Relations)
② Mr. KIM, Goun Soo (Planning)
③ Mr. KIM, Young Cheol (Membership)
④ Mr. NAM, Sang Woo (Legislation)
⑤ Mr. LEE, Bong Sang (Financial Affairs)

2. Current situation regarding members and notarization cases

- Due to the system of limiting maximum number of notaries and the compulsory retirement system, the number of authorized notaries has been decreasing, and that of appointed notaries has been increasing.

- * the compulsory retirement system : 80 years old up to Dec. 31, 2017 and 75 years old from Jan. 1, 2018
- * the maximum number system : Regulation regarding appointed notaries and authorized notaries' maximum number per District Prosecutor's Office
 ↳ nationwide 86 appointed notaries, 190 authorized notaries;
 all together 276 notaries

• Current situation in the number of notaries as of August 20, 2014

Type Year	Appointed Notaries	Authorized Notaries	TOTAL
2014. 8. 20.	66	296	362
2013. 12. 31.	59	298	357
2012. 12. 31.	48	316	364
2011. 12. 31.	40	339	379
2010. 12. 31.	38	355	393
2009. 12. 31.	33	361	394
2008. 12. 31.	33	353	386

• Current situation in the number of notaries as of August 20, 2014 of each district

District	Appointed Notaries	Authorized Notaries		Total Number of Notary Office
		Office	Attorney in Charge of Notarization	
Seoul	22	141	751	163
Uijeongbu	3	12	39	15
Incheon	1	19	56	20
Suwon	10	34	117	44
Chuncheon	3	3	10	6
Cheongju	2	7	26	9
Daejeon	5	8	26	13
Daegu	5	19	77	24
Busan	3	17	77	20
Ulsan	2	7	25	9
Changwon	4	8	27	12
Kwangju	3	14	53	17
Jeonju	2	5	21	7
Jeju	1	2	5	3
Total	66 (18.23%)	296 (81.77%)	1,310	362 (100%)

- Change in the number of notarization cases per each year

※ As of Dec. 31 of each year / cases

Year \ Type	Notarial Deed Preparation	Articles of Incorporation Certification	Corporate Minutes Certification	Deed Signed by a Private Person
2013	494,745	4,697	394,639	827,699
2012	701,793	5,582	402,150	861,561
2011	873,252	8,556	438,766	891,413
2010	760,336	10,985	396,193	823,075
2009	684,944	33,035	498,386	785,977
2008	779,806	51,851	543,118	909,435
2007	799,089	55,156	553,276	1,084,259
2006	691,710	52,186	533,277	1,018,542
2005	690,330	54,004	505,817	1,087,973
2004	1,022,003	47,721	492,795	911,697

- * Despite notarization's preventive judicial function as the system preventing dispute by preserving evidence of important transactions and proving the facts for the right holders' exercise of rights, current situation in the number of notarization service performance has not seen much change.
- * As the "Execution deed preparation manual" which prohibits unilateral notarization by money lenders as agent in a money lending contract have been implemented since Oct. 1, 2013, the number of notarial deed preparation has seen a drastic decrease.

II. Important current situation including modification of the notarization system, etc.

1. Restriction on re-appointment of notaries previously sanctioned

- The Ministry of Justice has implemented the "Manual for a cancellation of authorization prior to sanction, application for an exemption from the office, report of the change of an attorney in charge of notarization" with the following contents since Sep. 1, 2013. "Appointment/authorization" shall not be renewed as to notaries determined as unsuitable for performing the notarization service based on previous imposition of fines for two times or sanction of suspension at a minimum. "New appointment/new authorization" shall be refused unless five years pass from the above.

2. Current discussion regarding expansion of kinds of documents requiring execution certificates

- The Notary Act expanded the scope of notarization from payment of money, notes, and etc. measured in quantity to delivery of building, land, specified movable properties, and etc.
- However, among the movable properties under 「the Civil Act」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Notary Act provides the scope of specified movable properties as follows: ① ships registered under 「the Ship Act」; ② construction machinery registered under 「the Construction Machinery Management Act」; ③ automobiles registered under 「the Automobile Management Act」; ④ airplanes registered under 「the Aviation Act」; ⑤ properties of companies registered as factory and mining foundation under 「the Factory and Mining Foundations Mortgages Act; and ⑥ others registered or not registered under other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 Major movable properties like automobiles or airplanes are currently excluded from the scope of delivery execution certificates. And the delivery of a leased building which was expected to be most lively used by citizens has almost not been utilized. Thus, the revision of the Act and statutes has been pressed forward in which movable properties like automobile is included and a claim for expression of an intent is newly inserted.

3. Review as to revision of diverse notarization document forms

- Authentication by oath and the electronic authentication system were newly introduced as the Notary Act was amended in 2010. Many changes occurred to the authentication of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and the minutes by several revisions of the Commercial Act.
- Further due to revision of the Civil Act, notarial deed for a guardian contract was newly established. The revision of the Trust Act abolished the trust expression system, and a notarial deed must be prepared for one's own trust declaration, and etc. Pursuant to the aforementioned revisions of diverse laws, new establishment or

change of notarization document forms became necessary. Currently, introduction of notarization document forms such as the notarial deed form for guardian contract, and etc. has been pressed forward.

(2) 제1주제 발표문

(국문)

**공증인의 의무에 관하여
- 한국 법제를 중심으로 -**

2014. 9. 3. 대한공증인협회

김영철 회원이사

1. 들어가는 말

우리는 복잡한 현대사회 속에서 수많은 분쟁에 부딪히며 살아가고 있다. 과거 우리 사회는 사인들 간에 주먹구구식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었으나, 법치주의의 정착이 이루어짐에 따라 법에 의한 분쟁 해결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분쟁의 사후적 해결방안으로서 소송제도의 발전이 나날이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하나, 여전히 소송절차의 진행에 상당한 비용이 들 뿐만 아니라 많은 시간이 소모됨에 따라 당사자들은 원활한 분쟁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분쟁을 사전 예방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분쟁의 사전 예방제도로써 공증제도의 독자적인 사법장치로의 발전이 중요해졌다.

그러나 공증제도의 예방사법기능이라는 중요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공증실무는 개선할 점이 적지 않다. 또한 공증인의 직무, 나아가 공증제도의 존재조차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공증제도의 올바른 정착과 발전을 위해서 공증사무의 주체인 공증인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부실공증으로 인하여 또 다른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횡행함에 따라 2013년 9월 법무부는 「공증사무지침」을 신설하며 부실공증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였다. 이에 따르면, 공증인이 직전 임기 5년 동안 과태료 2회 또는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는 등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재임명·재인가를 받을 수 없으며, 그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는 신규 임명·인가도 허용하지 않는다.

이에 본고에서는 공증 실무의 비정상적 관행을 뿌리 뽑고 선진적인 공증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공증인이 지켜야할 기본적인 원칙 및 법제상 의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공증인의 일반적 의무

공증제도가 사전분쟁예방 및 선진계약문화발전을 위하여 올바르게 정착하기 위해서는 공증사무의 적절성 및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공증인법 제1조 역시 “이 법은 공증인의 지위와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여 공증사무의 적절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여 공증사무의 적절성과 공정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공증사무가 적절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기 위하여, 공증인은 전문성 및 기본적인 소양, 중립성과 독립성을 갖추어야 하며, 항상 기본권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이하에서 공증인의 일반적 의무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가. 전문성 및 기본적 소양

공증사무는 관련 문서들의 적법성을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한 법적 지식이 요구되므로, 공증인은 법률전문가로서 최고의 법적 지식을 갖추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에 공증인법 제15조의10은 공증인의 직무교육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공증인은 법에 따른 교육을 받는 동시에 부단히 업무자질과 업무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공증인들은 자신의 도덕소양을 향상시켜야 하며, 공증기관으로서 시민의 신뢰를 상실하게끔 하거나 공증인의 위엄에 상반되는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윤리적 태도를 가지고 업무에 임해야 한다.

나. 중립성

공증인은 법적 확실성을 지키며 당사자들 간의 정보의 부재나 불균형을 상쇄하기 위하여, '제3의 신뢰기관'으로서 대면한 촉탁인 뿐만 아니라 사안과 관련한 제3자에 대해서도 중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공증인은 도움을 가장 필요로 하는 계약 당사자에게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고, 적격 전문가로서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 공증인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당사자들을 유리하게 하는 조항을 포함하는 공적 문서를 작성할 수 없다.

다. 독립성

공증인은 사실만을 근거로 오직 헌법 및 법률에 의거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증 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객관적 사실이 아니거나 법률 외 요인의 영향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또한 공증인은 당사자에게 손해가 없도록 이들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행위하여야 하며, 촉탁인들을 차별하거나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라. 기본권에 대한 존중

공증인은 인권과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환경인 정의, 진실, 신뢰를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하며, 직무상 알게 된 촉탁인의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공증인은 부패, 위증 및 개인 및 경제 발전을 해하는 기타 행위, 비록 법률을 준수하는 행위라고 할지라도 공증인의 정신에 상반되는 행위, 또는 당사자들에게 명백하게 해로운 행위를 거부해야 한다.

3. 공증인의 법제상 의무

공증인법은 공증사무의 적절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증인의 일반적 의무를 구체화하여 개별적인 의무 규정을 담고 있다. 이하에서는 공증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별적인 공증인의 의무 중 주요의무들을 중심으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가. 촉탁인수의무

공증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는 공증업무를 거절할 수 없으며, 공증인이 촉탁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촉탁인 혹은 그 대리인에게 거절의 이유를 알려야 한다(공증인법 제4조). 이는 촉탁 받은 공증사무가 공증인 자신의 신념 내지 이념과 다르다 하더라도 촉탁을 거절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 공증 사무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해칠 수 있는 경우와 법에 의해 수임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정당하게 공증업무를 거절할 수 있다.

(1) 공증인의 제척

공증인법 제21조는 공증사무와 공증인 사이에 특수한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즉 ① 촉탁인, 그 대리인, 촉탁 받은 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친족인 경우(친족관계가 끝난 경우에도 동일), ②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의 법정대리인의 경우, ③ 촉탁 받은 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④ 촉탁 받은 사항에 관한 대리인이거나 보조인인 경우 또는 대리인이었거나 보조인이었던 경우에는 공증인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법에 의한 수임의 제한

공증인법 제25조는 법령에 위반한 사항, 무효인 법률행위와 무능력으로 인하여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해서는 증서를 작성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증인은 문서 내용이 법령에 저촉되는 것인지, 무효나 취소의 사유가 있지 않은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우리 법원은 공증인이 공정증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법률행위의 법령 위반, 무효 및 무능력에 의한 취소 등의 사유가 존재하는 것에 대하여 청취한 진술 및 경험칙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의심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관계인에게 설명을 구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공증인의 심사 의무를 제한하고 있다(인천지방법원 2004. 11. 18. 선고 2004나8500 판결).

나. 비밀누설금지의무

비밀누설금지의무란 공증인이 자신의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비밀보장을 해야 한다는 의무를 말한다(공증인법 제5조). 촉탁인은 자신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모든 사실을 공증인에게 공개하여야 하므로, 공증인이 촉탁인의 비밀정보를 결코 공개하지 않는다는 신뢰가 전제되어 있어야 한다. 즉, 촉탁인이 공증인을 신뢰하고 모든 사안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증인이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는 것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 제도적 보장이 바로 비밀유지의무인 것이다.

특히 형사소송법 제149조 및 민사소송법 제315조는 공증인이 법정증언이나 증거수집절차에서 촉탁인의 비밀에 관한 증언을 거부할 수 있고 이러한 거부권의 행사로 불이익이나 제재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함으로써 공증인에게 소송상 증언거부의 특권을 부여하고 있다.

위와 같은 비밀누설금지의무 위반 시 공증인은 형법 제317조 제1항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다. 다만 공증인법 제5조는 단서에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혹은 촉탁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공증인의 비밀 공개가 허용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149조 단서에 의거, 형사재판에서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증인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정보에 대한 증언을 거부할 수 없으므로 공증인은 촉탁인의 비밀을 공개하여야 한다.

반면, 촉탁인의 동의 내지 승낙이란 단순한 동의 내지 승낙이 아니라 공증인이 촉탁인에게 충분한 설명을 행한 후의 그것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물론 묵시적 동의 또는 추정적 승낙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나, 이 또한 촉탁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다. 겸직금지의무

공증인은 다른 공무를 겸하거나 사업을 경영할 수 없고, 상사회사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의 대표자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다. 다만, 상시 근무가 필요하지 아니하고 공증인의 직무수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업무로서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공증인법 제6조).

나아가 공증인의 업무가 변호사 업무와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 공증인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하여 공증인법 제15조의9는 공증인은 해당 법무법인등 또는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가 대리한 소송사건과

관련한 ① 법률행위나 그 밖에 사건에 관한 사실에 대한 공정증서의 작성, ② 어음·수표 또는 이에 부착된 보충지에 강제집행할 것을 기재한 증서의 작성, ③ 법인의 등기 절차에 첨부되는 의사록의 인증, ④ 정관의 인증을 수행할 수 없다.

라. 촉탁인 확인 의무

공증인법에 의하면 공증인은 공정증서를 작성하기에 앞서 촉탁인의 성명을 알고 또한 면식이 있어야 하며, 만일 촉탁인의 성명을 모르거나 그와 면식이 없을 때에는 주민등록증 기타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증명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공증인이 성명을 알고 면식도 있는 두 명의 증인으로 하여금 그 촉탁인이 상위 없음을 증명하게 하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에 의하여 상위 없음을 증명하도록 하여 촉탁인이 본인이 맞는지를 확인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다(공증인법 제27조, 제56조의2).

공증서류는 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력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계약당사자 간 합의한 사항을 공증 받은 경우 후일 이와 다른 주장을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금전지급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여기에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미리 승낙하면 판결처럼 집행력을 부여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이 공증증서는 법적으로 매우 강력한 효력을 가지므로 촉탁인들을 직접 확인하고 그들의 의사를 직접 청취하는 것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4. 나가는 글

공증제도가 올바르게 작동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공증인의 역할과 책임이 가장 중요하다. 이에 공증인은 법률 전문가로서 사전분쟁예방 및 선진계약문화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공증인으로서의 일반적 의무 및 법제상의 의무를 지켜 나가야 할 것이다. 앞으로 공증분야의 확대를 통하여 국민들이 공증제도를 값싸고 신속하고 안전한 법률서비스로 애용하는 동시에 공증인이 신뢰와 존경을 받는 사회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영문)

Duties of a Notary

- With the focus of the legal system of the Republic of Korea -

Sep. 3, 2014, KNA

KIM Young Cheol, Director of Membership

1. Introduction

In the complex modern society, we live our lives faced with many different types of disputes. In the past, disputes among private persons were solved based on the rule of thumb; gradually as the principle of the rule of law has been established, dispute resolution by the law becomes more active. However, the system of lawsuit which continues its development as an ex post facto solution method reveals disadvantage of incurring huge expenses, and the litigation procedure is time consuming, and parties to the lawsuit are confronted with a lot of hardships in actual dispute resolution. All of those phenomena led us to recognize necessity for deterrence of disputes. And the notarization system becomes all the more important as an independent judicial device as a prior dispute prevention system.

Despite the important role of the notarization system with its deterrent judiciary function, our notarization practice needs improvement. Further, notaries' occupational duties, and even the existence of the notarization system itself, have not been yet widely known to the general public. A notary's importance as a main role player in the notarization system cannot be emphasized enough for the system's settlement in the society and its development. Nonetheless, notaries committed acts of misconduct in notarization, and unlawful notarization often led to another dispute. Thus, the Ministry of Justice newly established 「Notarization service manual」 and tightened sanctions against unlawful notarization. According to the manual, notaries cannot receive renewal of appointment/authorization if they are determined as unsuitable for occupational duties by

receiving two-times imposition of fines or sanction of suspension, at a minimum, etc. New appointment/authorization is not allowed until 5 years passes.

In this context, this papers review fundamental principles and duties under the law and system that notaries must fulfil with the purpose of eliminating abnormal practice and establishing advanced notarization culture.

2. Notaries' general duties

Notarial acts' appropriateness and fairness must be secured so that the notaization system can settle down adequately for dispute deterrence and advanced contract culture development. Article 1 of the Notary Act provides that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prescribe the status and occupational duties of a notary so that appropriateness and fairness of notarial acts can be secured.” Accordingly notarial acts' proper and fair execution, notaries should be equipped with professionalism, basic qualification, and neutrality and independency, and always with attitude respecting basic rights. Following are descriptions of the most general notaries' duties.

A. Professionalism and basic qualification

Notarial acts require legal knowledge to understand lawfulness of relevant documents efficiently and accurately; thus, notaries should make real efforts to be equipped with the highest level legal knowledge. Accordingly, Article 15-10 of the Notary Act requires education for notaries' occupational duties. Notaries should make efforts to enhance the quality and level of their service. Furthermore, notaries should enhance their ethical standards and should not commit acts of misconduct harming dignity as notaries or making citizens lose trust in the establishment of notarization.

B. Neutrality

To secure legal certainty, and set off information inequity among the parties, notaries

shall maintain neutrality as “the third trustworthy institution” not only as to clients whom they meet face to face, but also as to the relevant third party. They should pay attention to contract parties who most need assistance, and also show an active attitude by offering qualified professional's advice. They cannot draw up official documents comprising provisions that may favour the parties either directly or indirectly.

C. Independency

Notaries shall conduct based only on the facts, pursuant to the Constitution and the Act and subordinate statutes through the lawful procedure. They should not be affected by the non-objective facts or the factors other than those consistent with the law.

Furthermore, notaries shall act independently so that the parties do not suffer losses, and shall neither discriminate against a certain client nor exercise any influence.

D. Respect for fundamental rights

Notaries shall respect and protect justice, truth, and trust as those constitute indispensable environments for human rights and life corresponding to human dignity. They shall not disclose clients' confidential information gathered during performance of occupational duties.

Notaries shall reject acts of corruption, perjury, acts harming individuals and economic development, acts against notaries' professionalism or acts clearly injuring the parties' interests.

3. Notaries' duties under the law

The Notary Act specifies notaries' general duties and provides for individual duties to secure notarial acts' appropriateness and fairness. The followings are notaries' major duties under the Notary Act.

A. Duty to accept commission

A notary shall not refuse a commission pursuant to Article 2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mmission”) without due reasons. Where a notary refuses the commission, he shall notify the person who requests the commission or his agent of the reason why he refuses the commission. (Article 4 of the Notary Act). It means that a notary shall not refuse commission even if the commissioned notarization differs from his/her belief or ideology, but the notarization may be justly refused if fairness and neutrality are under risk and retention of the service is prohibited under the law.

(1) Exclusion of notaries

Under Article 21 of the Notary Act, a notary shall not perform his/her occupational duties ① where the notary is a relative of the client, his agent, or the person interested in the matter commissioned and the same shall apply even if such relationship is terminated, ② where the notary is the legal representative of the client or his agent, ③ where the notary has interests in the matter commissioned, and ④ where the notary is or was the agent or assistant concerning the matter commissioned.

(2) Legal restriction on retention of a notary

Article 25 of the Notary Act provides that a notary may not prepare a deed concerning any matter in violation of the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a null and void juristic act, and a juristic act which may be cancelled on account of incompetence. Notaries shall determine whether the document's contents violates the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or there are grounds for invalidation or cancellation.

However, the court of the ROK held that notaries' investigation duty is limited on the ground that they are not obligated to actively investigate during the preparation of notarial deeds by seeking explanations from the relevant persons unless specific doubts exist based on the statements and the law of experience concerning the existence of

refusal grounds such as breach of the law, invalidity, and incompetence (see Incheon District Court Decision 2004Na8500 decided Nov. 18, 2004).

B. Non-disclosure duty regarding confidential information

Non-disclosure duty regarding confidential information means that a notary shall not disclose, unless otherwise specifically stipulated in the Act, confidential information s/he comes to know during the performance of occupational duties (Article 5 of the Notary Act). A client inevitably discloses the facts related to one's own rights and duties to notaries, but it is premised on trust for notaries' non-disclosure duty regarding confidential information. Non-disclosure regarding confidential information s/he comes to know during the performance of occupational duties shall be guaranteed within the framework of the system so that clients can trust notaries and disclose all affairs. Such systematic guarantee is the non-disclosure duty of confidential information.

Especially under Article 149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and Article 315 of the Civil Procedure Act, notaries may refuse to testify regarding a client's secrets during the court testimony or the evidence collection procedure. And they are not disadvantaged or sanctioned because of exercise of a refusal right. Such provisions grant notaries the privilege of refusing to testify in litigation.

Notaries may be punished under Article 317(1) of the Criminal Act due to breach of non-disclosure duty of confidential information. However, Article 5 of the Notary Act explicitly provides that, if a special provision exists or a client agrees, notaries may disclose secrets.

Since notaries cannot refuse to testify as to secret information revealed to them during performance of occupational duties if the client consents or on behalf of public interests under the proviso to Article 149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then, they must disclose the client's secrets.

On the other hand, a client's consent or approval does not refer to mere consent or approval, but it is reasonable to see them as consent or approval obtained after the client received sufficient explanation from notaries. It is generally accepted that a tacit agreement or implied approval is also possible, but the premise is that they can only be so regarded for the benefit of a client.

C. Duty of not holding dual employment

A notary shall not concurrently serve in a public office or engage in a commercial business or become the representative or an employee of a commercial company or an incorporated association which makes a profit except where the notary obtains the approval of the Minister of Justice as a case in which a full-time attendance is not required and a performance of occupational duties of the notary is not interfered with. (Article 6 of the Notary Act).

Further, where notarial acts conflict with duties as attorney at law, fairness in notaries' execution of occupational duties can be harmed. For its prevention, Article 15-9 of the Notary Act provides that, regarding the lawsuits represented by the pertinent law firm or the notarization-authorized joint law office, etc., notaries shall not perform notarial acts such as ① preparation of a notarial deed on a juristic act or a fact concerning other private rights, ② preparation of a deed stating a compulsory execution on bills and checks or the supplementary paper attached to them, ③ certification of the minutes attached to the procedure of registration of corporation, and ④ certification of the articles of association.

D. Duty of client verification and identification

Under the Notary Act, notaries have an occupational duty to verify the client's identification and notaries are required to know the client's name and face before s/he prepares a deed. If a notary does not know the client's name or face, a notary shall have the client prove his/her identification by submitting a certificate of resident registration or

a certificate issued by a competent administrative agency attached with photo or having two witnesses whose names and faces are known to the notary prove the truthfulness of the client's identification, or by other equivalent methods (Articles 27 and 56-2 of the Notary Act).

Notarized documents can be admitted as evidence with strong probative power in trial. Parties to the contract may not make assertions different from those agreed upon among themselves. Moreover, a notarial deed prepared by a debtor with an advance approval of compulsory execution as to a monetary payment claim has the effect same as the judgment of the court in terms of power of execution. A notarial deed like the above has very strong legal effect. Thus, it cannot be emphasized enough that notaries directly verify clients and hear their intentions directly from them.

4. Closing comment

Notaries' role and responsibility are of the utmost importance for the notarization system to function well and develop itself continually. Notaries should have pride in contributing to dispute deterrence and establishment of advanced contract culture. They are well advised to abide by general as well as legal duties as notaries. We are anticipating the society in which citizens will actively utilize the notarization system as a speedy and safe legal service by our efforts for expansion of the scope of notarial acts, and at the same time, notaries are well trusted and respected.

(4) 제2주제 발표문

(국문)

한국의 전자공증제도

2014. 9. 3. 대한공증인협회

김 건 수 기획이사

1. 들어가는 말

한국은 일반적으로 인터넷을 비롯한 통신망 기반(基盤)이 상당히 앞서 있는 나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통신망 기반을 이용하여 입법·행정·사법 각 분야의 각 개별 국가 기관마다 전자정부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는 상황이다. 각 기관은 그 시스템을 통하여 기관 내부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물론 국민들에 대한 각종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상거래에 있어서도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거래가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통신망을 기반으로 사무를 처리할 때나 거래가 이루어질 때에는 종이 문서가 작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전자문서가 작성된다. 더 나아가 개인 간의 거래에서도 휴대 등의 용이함 때문에 전자문서의 이용이 있을 수 있다. 전자문서의 등장으로 그에 대하여 공증인의 인증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느냐의 문제가 필연적으로 대두된다.

한편 공인인증서에 의해 전자서명해서 작성된 전자문서의 경우에는 공증인의 인증 없이 그 자체로 그 전자서명이 본인에 의한 것으로 인정된다(전자서명법 제3조 제1항). 그만큼 전자문서에 대하여는 공증인에 의한 인증 필요성이 덜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지만 사서증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본인에 의한 날인으로 추정받을 수 있는 인감증명 제도가 시행되는 나라(한국, 일본 등)에서도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해 사서증서의 인증이 이용되고 있다.

마찬가지 이유로 전자문서에 대하여도 비록 공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서명에 의해 본인에 의한 전자서명으로 인정된다고 하여도, 별도로 전자공증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는 2009년 개정 공증인법(법률 제9416호) 제5장의2

에서 전자공증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2010. 8. 7.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한국 전자공증 제도의 개요, 전자공증의 처리현황과 그 평가, 향후 과제 순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2. 한국 전자공증제도의 개요

가. 지정공증인

종래 일반 공증에서는 공증인 모두가 동일권한을 가지고 공증사무를 하지만, 전자공증은 지정공증인만이 전자공증에 관한 사무를 행한다. 여기서 지정공증인이란 공증인 중에서 전자공증사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공증인법 제1조의2 제5호). 지정공증인으로 지정받으려면 전자공증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일정한 시설이 필요하다(공증인법 제66조의3 제4항, 동 시행령 제38조).

[공증인 현황]

(2014. 8. 20. 기준)

관 할	공증인			지정공증인
	임명공증인	인가공증인	합 계	
서 울	22	141	163	47
의정부	3	12	15	4
인 천	1	19	20	5
수 원	10	34	44	18
춘 천	3	3	6	1
청 주	2	7	9	3
대 전	5	8	13	2
대 구	5	19	24	6
부 산	3	17	20	3
울 산	2	7	9	2
창 원	4	8	12	2
광 주	3	14	17	5
전 주	2	5	7	3
제 주	1	2	3	1
소 계	66	296	362	102

나. 전자공증시스템

공증인이 전자공증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개발하여 보급한 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는바, 이를 이른바 전자공증시스템이라고 한다(<http://enotary.moj.go.kr>). 공증인뿐만 아니라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도 전자공증시스템을 이용해서 촉탁하여야 하고, 전자공증시스템을 이용해서 촉탁하려면 사전에 전자공증시스템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하여야 한다.

다. 전자문서에 대한 인증

전자문서에 대한 인증은 전자문서의 전자서명을 공증인이 확인하고 이에 대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전자문서에 대한 인증은 촉탁인으로 하여금 지정공증인의 면전에서 전자문서에 전자서명을 하게 하거나, 전자문서의 전자서명을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지정공증인이 그 사실을 적은 정보를 전자문서에 전자적 방식으로 첨부하는 방법에 의한다(공증인법 제66조의5 제1항). 비록 전자공증시스템을 통하여 인증촉탁을 한 경우라도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은 공증사무소에 출석하여 지정공증인의 면전에서 전자문서의 전자서명이 본인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여야 하는 것이다.

라. 전자화문서에 대한 인증

전자화문서란 종이 문서나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 즉 전자화대상문서를 정보처리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문서를 말하는 것으로 흔히 스캐너를 이용하여 스캔한 문서가 여기에 해당한다. 전자화문서에 대한 인증은 사서증서의 등본인증과 비교된다. 사서증서의 등본인증은 종이 문서 형태로 발급된 등본에 대하여 공증인이 원본과 대조하여 서로 일치하는 경우에 공증인이 이를 인정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것이고, 전자화문서에 대한 인증은 종이 문서에 관하여 전자적 형태로 발급된 등본에 대해 지정공증인이 전자화대상문서와 대조하여 서로 일치하는 경우에 지정공증인이 이를 인정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것이다. 다만 전자화문서에 대한 인증의 경우에는 지정공증인이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으로부터 전자화대상문서를 제출받아 스캐너를 이용하여 직접 전자화문서를 만들어 이에 대하여 인증을 부여한다.

마. 정보동일성 증명과 동일정보 제공

전자문서에 대한 인증을 한 경우나 전자화문서에 대한 인증을 한 경우 지정공증인은 전자공증시스템을 통하여 인증한 전자문서나 전자화문서에 수록된 정보와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20년간 보존한다(공증인법 제66조의8 제1항). 그리하여 인증된 전자문서나 전자화문서를 제출받은 기관은 전자공증시스템에 접속하여 그 전자문서나 전자화문서가 해당 지정공증인에 의해서 인증된 것인지 확인할 수 있고, 나아가 정보동일성 증명을 받을 수 있다(공증인법 제66조의9 제1항 제1호).

한편 촉탁인이 인증한 전자문서나 전자화문서에 대한 정보의 보관을 청구한 경우 지정공증인은 인증한 전자문서나 전자화문서와 동일한 정보를 보관하여야 한다(공증인법 제66조의8 제2항). 그리하여 촉탁인이나 그 승계인은 지정공증인이 전자공증시스템 상에 보관된 정보에 근거하여 인증한 전자문서나 전자화문서와 동일한 정보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공증인법 제66조의9 제1항 2호).

3. 전자공증 이용 현황(2014. 6. 30. 기준)

가. 소속 지방검찰청별

관 할	총 건수	관 할	총 건수
서울	113	대구	3
의정부	10	부산	5
인천	11	울산	4
수원	17	창원	3
춘천	0	광주	3
청주	0	전주	22
대전	5	제주	0
총 건수 합계		196	

나. 인증 유형별

문서 유형별	총 건수
전자문서	145
전자화문서	51
합 계	196

다. 문서 종류별

문서의 종류	총 건수
일반전자문서	19
정관	5
의사록	172
합 계	196

4. 향후 과제

한국의 전자공증은 도입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용실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아직 친숙성 등 사회적 여건이 성숙되지 아니한 측면이 비교적 크다고 여겨진다. 의무적으로 전자공증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정해진 바가 없고, 특별히 전자공증을 받으면 인지세를 면제하는 등의 이익도 없으며, 공증사무소에 오지 않아도 되는 편리성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또 한편으로는 공증업계의 대응에도 부족한 점이 약간은 있는 것 같다. 가령 변조에 대비하거나 장기간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화문서에 대한 인증을 촉탁하면서 그 정보의 보관을 청구하는 것을 활용할 수 있다. 이는 사서증서의 인증에 비하여 전자공증이 훨씬 효과적인 것이다. 전자화문서에 대한 인증의 이와 같은 이점을 널리 알리는 역할은 그 누구도 아닌 공증인의 몫이다. 그런 점에서 공증인이나 대한공증인협회의 노력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하겠다.

한편 최근 법무부와 대한공증인협회는 전자확정일자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전자확정일자는 순전히 전자공증시스템을 통하여 부여될 것이다. 말하자면 공증사무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도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다. 수수료도 매우 저렴하게 책정될 것이다. 이용의 편리함과 수수료의 저렴함으로 인하여 상당한 이용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전자확정일자 제도를 통하여 지정공증인이나 공증고객 역시 전자공증에 보다 더 친숙해질 수 있을 것이다.

(영문)

The Electronic Notarization System of the Republic of Korea

Sep. 3, 2014, KNA

KIM Goun Soo, Director of Planning

1. Introduction

The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Korea”) is evaluated as one of the world's most wired countries with the advanced communications network bases such as the Internet. Each individual government agency of the legislative, administrative, and judicial area commands the well established electronic government system on the basis of communications network. Each agency offers diverse services through the system in addition to the management of internal affairs. The Internet-based e-commerce has become very lively in trade.

In the office works or e-commerce on the communications network bases, electronic documents, not paper-based documents, are prepared. Electronic documents are used in interpersonal transactions due to its mobility. The issue inevitably arises as to how a notary's authentication shall progress at the appearance of electronic documents.

On the other hand, in case of electronic documents with a digital signature by means of the authentication certificate, the digital signature itself is acknowledged as attached by oneself without notary's authentication (Article 3(1) of the Digital Signature Act). To that extent, electronic documents demand less of notary authentication. However, even in countries (Korea, Japan, etc.) with the seal authentication system where a seal stamp impression on a deed signed by a private person is presumed as one's own impression if the seal authentication certificate is attached to it, authentication of such private deed is on demand to satisfy various needs.

Even if one's own digital signature by the authentication certificate is acknowledged with regards to electronic documents for the same reason, introduction of the electronic notarization system has been on demand separately. Accordingly, Korea newly inserted provisions as to electronic notarization, which is the authentication on electronic documents, in Chapter 5-2 of the notary Act (amended as Act No. 9416 of 2009). It took effect on August 7, 2010.

The followings are the overview of the Korean electronic notarization system, current situation of electronic notarization, and its future tasks.

2. The overview of the Korean electronic notarization system

A. Designated notary

Formerly in general notarization, all notaries are equally authorized to provide notary services; however in electronic notarization, only the designated notaries may conduct affairs concerning the electronic notarization. The term “designated notary” means a person designated by the Minister of Justice among the notaries to provide electronic notary service (Article 1-2 subparagraph. 5 of the notary Act). Certain facilities needed for providing electronic notary services are required as an element to be designated as designated notary (Article 66-3(4) of the notary Act, Article 38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notary Act).

[Current situation of notaries]

(as of August 20, 2014)

District	Notary			Designated Notaries
	Appointed Notaries	Authorized Notaries	Subtotal	
Seoul	22	141	163	47
Uijeongbu	3	12	15	4
Incheon	1	19	20	5
Suwon	10	34	44	18
Chuncheon	3	3	6	1
Cheongju	2	7	9	3
Daejeon	5	8	13	2
Daegu	5	19	24	6
Busan	3	17	20	3
Ulsan	2	7	9	2
Changwon	4	8	12	2
Kwangju	3	14	17	5
Jeonju	2	5	7	3
Jeju	1	2	3	1
Total	66	296	362	102

B. Electronic notarization system

A notary must use the system developed and distributed by the Minister of Justice for providing electronic notarial service, which is referred to as the electronic notarization system (<http://enotary.moj.go.kr>). The electronic notarization service users-a notary, a client as well as a person with power of attorney-must use the electronic notarization system. They must register as its member prior to its use through connecting to the above system.

C. Authentication of electronic documents

Authentication of electronic documents means that a notary verifies the electronic document's digital signature and certifies it. A designated notary certifies electronic

documents by either having a client attach his/her digital signature to electronic documents, or having a client or a person with power of attorney (hereinafter “agent”) confirm a digital signature on electronic documents and then attaching the information regarding the above facts by electronic means to electronic documents (Article 66-5(1) of the notary Act). Even where authentication is requested through the electronic notarization system, a client or an agent must visit the notary office and verify the electronic document's digital signature as one's own signature in the presence of a designated notary.

D. Authentication of digitalized documents

The paper-based documents or other ones in the non-electronic form can be digitalized by scanning. Such digitalized documents refer to documents scanned using a scanner so that they can be processed by the data processing system. Authentication of digitalized documents is compared with the authentication of the copy of a deed signed by a private person.

A notary authenticates a paper-based copy if it is identical to the original document. A designated notary authenticates a paper-based document's electronic copy produced by the electronic means if it is identical to the document to be digitalized. However, in case of digitalized documents authentication, a designated notary receives documents to be digitalized from a client or an agent, and produces digitalized documents using a scanner by himself/herself and then, authenticates them.

E. Verification of the identity of the contents and provision of the identical contents

In case of the authentication of electronic or digitalized document, a designated notary shall keep the contents which can verify the identity with the contents of the electronic or digitalized documents authenticated through the electronic notarization system for 20 years (Article 66-8(1) of the notary Act). Thus, the agency receiving authenticated electronic or digitalized documents may connect with the electronic notarization system,

and verify whether the electronic or digitalized document was authenticated by a designated notary, and further, it can obtain the proof of the identity of the contents (Article 66-9(1)1 of the notary Act).

On the other hand if a client requests a designated notary to keep the contents of authenticated electronic or digitalized documents, a designated notary shall keep the contents identical to the authenticated electronic or digitalized documents (Article 66-8(2) of the notary Act). Thus, a client or his/her successor may request the contents identical to the authenticated electronic or digitalized documents based on the contents which a designated notary maintains in the electronic notarization system (Article 66-9(1)2 of the notary Act).

3. Current situation of utilization of electronic notarization

(as of 2014. 6. 30.)

A. District prosecutor's office where notaries belong

District	Total Cases	District	Total Cases
Seoul	113	Daegu	3
Uijeongbu	10	Busan	5
Incheon	11	Ulsan	4
Suwon	17	Changwon	3
Chuncheon	0	Kwangju	3
Cheongju	0	Jeonju	22
Daejeon	5	Jeju	0
Total		196	

B. Authentication types

Classification	Total Cases
Electronic Document Authentication	145
Digitalized Document Authentication	51
Total	196

C. Document types

Document Types	Total Cases
General Electronic Document	19
Articles of Incorporation	5
Minutes	172
Total	196

4. Future tasks

The electronic notarization in Korea was introduced four years ago, but its utilization rate stays at the relatively low level. It may have many causes, but the main one appears to be that the circumstance of our society has not been yet mature for its active use especially in terms of unfamiliarity. Furthermore, electronic notarization is neither legally required, nor benefits exist such as exemption from stamp duty payment for electronic notarization; yet, there is even no convenience like that one need not visit the notary office personally.

On the other hand, notaries may be partly responsible for the above situation as they did not appear to have responded sufficiently. For example, in cases which need preparation against falsification or keeping for a long term, the request for the long-term storage of digitalized documents may be utilized at the request for authentication. For that purpose, the electronic notarization is much more effective compared to the authentication of a deed signed by a private person. Notaries should be more active in promoting benefits of authentication of digitalized documents. It is well recognized that notaries or the KNA should make real efforts in this regard.

The Ministry of Justice and the KNA are pressing forward introduction of the electronic officially-stamped date system. The electronic officially-stamped date system will be possible exclusively through the electronic notarization system. That is to say, one may use the notarization service for officially-stamped date without visiting the notary office. Fee for the service will be set at the very low level. High rate of use is expected due to convenience and low fee. Further, through the electronic officially-stamped date system,

a designated notary or client for notarization service may become more familiar with the electronic notarization.

6. 마치며 – 중국 측의 손님접대

2013년 몽골 회의 시에도 참석자들을 위하여 몽골공증인협회의 회원들이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주었다. 이번 중국 북경회의에서도 회의 준비는 물론 회원 상호 간의 우호 증진을 위한 만찬 및 관광 안내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었다. 회의 당일 저녁은 인민대회당에서 그리고 9. 4.은 고궁, 이화원 안내를 해 주었다. 모든 회원들은 감사의 뜻을 표하였다.

이번 회의 후에 일본공증인연합회 회장이 돌아가셔서 신임 회장이 선출되어 금년도 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다음 번 일본 동경회의에서는 현재와 같이 매년 개최를 하는 것 보다는 3년에 한 번 정도 순회를 하면서 개최하는 방안, 회원국이 늘어나면 거래가 많은 양국 간의 실무회의 방안 등이 논의가 될 듯하다.

이제 아시아 지역도 회원국이 6개 국으로 늘어났으며 다른 나라들도 계속 가입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협회에도 많은 분들이 국제적 협력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길 기원한다. 